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개 별 소 비 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‘2026년 4월 30일까지’에서 ‘2026년 6월 30일까지’로 연장하되,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06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“2026년 4월 30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, “247.5원”을 “206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) ①제2조의2 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.
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탄력세율)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3. 삭제 3의2.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: 킬로그램당 275원. 다만, 2026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.5원으로 한다. 4. ~ 7. (생략) ② 삭제 ③·④ (생략)	제2조의2(탄력세율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의2. ----- -----. --- 2026년 6월 30일----- ----- 206원-----. 4. ~ 7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